**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ᆞ운용 가이드라인**

제정 2011. 5. 1

**Ⅰ. 목적**

이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와의 회사 거래에 있어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용하여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을 최소화하면서도 회사내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Ⅱ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ᆞ운용 가이드라인**

**1. 기본원칙**

이 가이드라인은 회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ᆞ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,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구매 주관부서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ᆞ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**2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ᆞ운용 가이드라인**

**가.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**

(1) 내부 심의위원회는 **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**을 포함하여 **3인 이상**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
(2)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(CP)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(1)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.

**나.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**

(1)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(2) 내부 심의위원회는 회사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하도급거래계약(예상)금액이 일정비율( 직전사업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,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%, 1,000억원 이상 5,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%, 5,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2%,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1%)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
<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예시>

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
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

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

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
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
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
(3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ᆞ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
(4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
(5)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
(6)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(7)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**부 칙(2011. 5. 1)**

이 가이드라인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